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부서)의 장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0-14호
2020. 2. 28.(금)

차 례

고 시(2)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고시 제2020-23호) ·····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24호) ····· 2

공 고(2)

- 대덕구 문평동 완충녹지 내 불법 공작물 철거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83호) ···· 3
- 2020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공고 제2020-197호) ····· 4

입법예고(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86호) ···· 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87호) ·· 10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2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지적(㎡)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유면적(㎡)		허가기간
						당초	변경	
2018-02-01 (20.2.21.)	이장영 (대전 대덕구 장동로223-**)	장동 831-22	하천	476	경작	46	123	'20.2.21.~ '22.12.31.
					주차·야적	64	64	
					계	110	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2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와동 72	신탄진로232번길 66-1	2020. 2. 28.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와동 91-5	신탄진로232번길 97	2020. 2. 28.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83호

대덕구 문평동 완충녹지 내 불법 공작물 철거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47번지 일원(완충녹지)에 설치된 불법 공작물 설치자에게 철거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송달내용 : 대덕구 문평동 완충녹지 내 불법공작물 자진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0. 2. 28. ~ 3. 13.(14일간)
3. 공고대상 : 불법 공작물 / 대덕구 문평동 47번지(완충녹지) 내
4. 설 치 자 : 미 상
5. 공고 및 게시장소 : 관보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6. 계고내용
   - 상기 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무자의 송달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바, 2020. 3. 30.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일 내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 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97호

2020년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0년 2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우리 대덕구의 '20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56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871억원)보다 698억원이 많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26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393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8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0.22%입니다.

◈ 우리 구의 '20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고, 통합재정수지 또한 흑자로써 재정규모나 여건에 비해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유사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가 상승한 것에 반해 우리 구는 다소 하락하여 자주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홍보실 최승묵(042-608-6055)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8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0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전화 : 042-608-5351, FAX:042-608-3849, E-Mail : seowou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담당자 서성원 (전화 : 042-608-53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각 부서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검토 및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2.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7조(위원의 공정검토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검토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①제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8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 이후 법령 해석의 차이에 따른 행정착오 발생의 여지를 없애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재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회의 및 운영, 의무,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0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전화 : 042-608-5351, FAX:042-608-3849, E-Mail : seowou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담당자 서성원 (전화 : 042-608-53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매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용역 등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 또는 심의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